

# 초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제안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

## 2. 제안이유

- ‘23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국토부 가이드라인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주요사업 및 추진일정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개요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 사업명칭 : 평화의 상징,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장마을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 1,4리 일원
- 사업면적 : 약 60,000m<sup>2</sup>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간)
- 총사업비 : 92.6억(국비 50, 도비 8, 군비 34.3, 민간 0.3)

## ② 도시재생 일반지역 주요사업

### ○ 교류중심, 기반 만들기 사업

- 초전대장마루 거점센터 조성(H/W)
-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S/W)

### ○ 삶터중심, 마을가꾸기 사업

- 주거지 및 골목길 동행사업(H/W)
- 골목길 안전마을사업(H/W)

### ○ 마을중심, 이야기 만들기 사업

- 문학대장거리 조성사업(H/W)
- 평화공원 조성사업(H/W)
- 초전면 콘텐츠 개발사업(S/W)

### ③ 도시재생 일반지역 단위사업 예산 및 기간

○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92.6억(국비 50, 도비 8, 군비 34.3, 민간 0.3)

구분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계	마중물		자체 지방비	민간
						국비	지방비		
총합계 (①+②+③+④+⑤)					9,260.0	5,000.0	3,330.0	900.0	30.0
① 소 계					8,360.0	5,000.0	3,330.0		30.0
교류중심, 기반만들기	1	초전대장마루 조성	초전대장마루 거점 조성	H/W	3,550.0	2,130.0	1,420.0		-
삶터 중심, 마을 가꾸기	2	주거지 및 골목길 동행사업	집수리 / 빈집정비사업	H/W	430.0	-	400.0		30.0
			마을안길 정비	H/W	900.0	780.0	120.0		
	3	안전마을 사업	주거지 골목길 안전마을사업	H/W	340.0	204.0	136.0		
마을중심, 이야기 만들기	4	초전면 문학대장거리 조성	특화가로 마스터플랜	H/W	150.0	-	150.0		-
			경관시설물 조성	H/W	1,500.0	992.0	508.0		
	5	초전면 평화공원 조성	평화공원조성	H/W	200.0	140.0	60.0		
			거점주차장조성	H/W	1,290.0	754.0	536.0	-	
② 소 계					900.0	-	-	900.0	-
자자체 사업 (SW사업)	1		재미난 초전살이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S/W	60.0			60.0	
	2		마을기업 육성교육	S/W	40.0			40.0	
	3		상품기획 및 창업교육	S/W	60.0			60.0	
	4	사업관리	현장지원센터 운영	S/W	400.0			400.0	
			거점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S/W	50.0			50.0	
			모니터링 성과지표개발 및 모니터링조사	S/W	80.0			80.0	
	5		집수리 교육사업	S/W	40.0			40.0	
	6		주민공모사업	S/W	100.0			100.0	
	7		초전면 특화스토리 개발	S/W	40.0			40.0	
8		문학대장 110번지를 걷다(북콘서트)	S/W	30.0			30.0		

○ 연차별 사업예산

구분	예산 (백만원)	연도별			
		2024	2025	2026	2027
도시재생사업	9,260	2,000	2,500	2,500	2,260

4.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2019. 08.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2022. 07. :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
- 2023. 03. :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 개최
- 2023. 04.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23. 09. : 공모 선정 및 활성화계획 승인
- 2024. 01. : 실시 설계용역
- 2025. 01. : 사업 착수
- 2027. 12. : 사업 완료

5.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항

관련법령 발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